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앱마켓 외부결제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결제 제한·금지 >
■ 이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843호)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앱 마켓 외부결제 제한 금지 구체화 및 제3자에 의한 전자지급결제대행 (PG) 서비스 결제 제한·금지 등	3
참고자료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정현의원 등 18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8. 14.

다. 회부연월일 : 2024. 8.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바일콘텐츠 서비스는 국민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이는 앱 마켓시장에서 다수의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들이 기여해 온 상호작용의 결과임.

그러나, 스마트폰에 필수적인 모바일 OS를 통해 앱 마켓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들이 앱 결제방식 제한, 자기 앱 마켓 이용 등을 강제하면서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들의 선택권은 상당히 제한되고, 대형 앱 마켓 사업자의 독점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바 있으나, 일부 앱 마켓사업자들은 자기 앱 마켓 외부에서의 결제를 여전히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모바일콘텐츠 사업자가 제3자 결제를 이용할 경우 해당 앱 마켓 이용 대비 실질적으로 같거나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법 조항을 우회하거나 회피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우리나라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법 제정에 주목

한 EU, 영국 및 일본 등에서는 대형 앱 마켓사업자에게 자기 앱 마켓 외부에서의 결제방식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EU에서는 DMA(Digital Market Act)에 따라 애플이 자기 앱 마켓에서만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법 위반으로 제재를 진행 중인 상황임.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 앱 마켓 외부에서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을 허용하도록 하여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결제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경쟁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9호 개정 및 제5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앱 마켓 외부결제 및 제3자에 의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 결제 제한·금지 금지

기존의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를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웹브라우저에서의 결제 등 자기 앱 마켓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벗어난 외부에서의 결제는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로 구체화하고(안 제50조제1항제9호),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 외의 자에 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통한 결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함(안 제50조제1항제9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금지행위) ① (생략) 1. ~ 8. (생략) 9.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u>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u> <u><신설></u>	제50조(금지행위) ①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9. ----- ----- <u>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웹브라우저에서의 결제 등 자기 앱 마켓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벗어난 외부에서의 결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u> <u>9의2.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u>

10. · 11. (생략) ② · ③ (생략)	<u>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외의 자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통한 결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u> 10. · 11.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

□ 검토사항

- 개정안은 기존의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를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자기 앱 마켓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벗어난 외부에서의 결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로 구체화하고, ‘앱 마켓사 또는 자사 계열사 외 제3자에 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통한 결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50조제1항제9호에 따라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일부 앱 마켓사업자들은 자기 앱 마켓 외부에서의 결제를 여전히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모바일콘

텐츠 사업자가 제3자 결제를 이용할 경우 더 높은 비용 등의 제한을 가함으로써 사실상 특정한 방식 또는 자기 애플마켓을 통한 결제를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음.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구체적으로 ‘외부에서의 결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제3자에 의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결제를 허용하게 한다면, 결제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경쟁을 활성화하여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되어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아래와 같이 현행 규정의 규율범위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규정¹⁾ 등을 비추어 볼 때 개정안의 내용이 오히려 규율범위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고, 애플마켓 또는 자사 계열사 외 제3자에 의한 PG결제 문제는 현행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규정으로 규제 가능하므로 별도로 해당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구체적으로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외부결제를 허용하더라도 인앱결제 등 특정 결제방식에 유리한 조건을 설정하는 등 사실상

1)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제8호 가목~바목

가. 특정 결제방식과 다른 결제방식 간에 등록·갱신·점검 거부·지연·제한·삭제·차단

나. 이용 거부·지연·정지·제한

다. 기술적 제한

라. 접근·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게

마. 다른 이용조건 설정 제한

바. 애플마켓 노출, 수수료 등에 대해 불합리·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

*별표4의 구체적 내용은 참고자료 참조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까지 규제될 수 있도록 하면서 앱마켓 사업자가 웹브라우저에서의 결제 등에 대한 보안·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건 설정 등의 예외를 인정하여 정당한 사유 존재시 외부결제 제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현행 특정 결제방식 강제금지(법 제50조제1항제9호)는 외부결제를 허용하더라도 인앱결제 등 특정 결제방식에 유리한 조건을 설정하는 등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까지 규제하고 있고, 제3자에 의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는 현행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규정으로 규제가 가능하므로 개정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 만약, 개정안과 같이 법에 웹브라우저에서의 결제 등 모바일콘텐츠(앱) 등을 벗어난 외부 결제를 허용하더라도, 앱마켓사업자가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보안,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등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요건으로 추가하여 ‘외부에서의 결제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개정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개정안의 금지행위는 앱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결제수단을 우대하는 자사우대행위 혹은 자신의 결제수단을 이용해야만 앱

마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끼워팔기 행위로,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대표적인 반경쟁행위이므로, 플랫폼 시장의 반경쟁행위는 경쟁당국이 규율하고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은 다음과 같음.

- 한국통신자산업협회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외부 결제 시 보안 관련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중소·영세 개발사의 경우 운영의 복잡성과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제3자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등 외부 결제를 일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며, 외부 결제시 기술적 오류로 결제후 본래 앱 화면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불법 콘텐츠 판매·사기 등에 악용 우려가 있고, ‘정당한 사유’ 존재시 외부결제 제한 허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현행 규정이 이미 특정한 방식으로의 결제방식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25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1. ~ 7. (생략)

8. 앱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앱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이 경우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접점 등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나.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앱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다.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라. 특정한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에 비하여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마.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가 결제방식에 따라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조건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바.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에게 앱마켓 노출, 검색, 광고, 데이터 처리, 수수료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9. ~ 10. (생략)